

의안번호	2214470
의 퇴 인	서미화의원
회 답 일	2026.01.15.
추계번호	25C634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54조 (급여의 정지)	○ 제1항 제2호 ¹⁾ 에도 불구하고 국외 체류 기간이 제 74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면제를 받는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제49조에 따른 요양비 지급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음(제2항)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54조 (급여의 정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급여의 정지(안 제54조)

- 개정안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지속 납부하고 있는 국외 체류자에게 요양비²⁾를

1) 제54조(급여의 정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간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제6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1. 삭제 <2020. 4. 7.>

2.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3.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교도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2)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요양비) ① 공단은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제 98조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기간 중인 요양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준요양기관”이라 한다)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거나 요양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에는 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요양비로 지급한다.

② 준요양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비 명세서나 요양 명세를 적은 영수증을 요양을 받은

지급할 경우 건강보험 재정지출의 증가와 이에 따른 국가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요양비는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한 요양을 받을 경우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개정안은 국외에서도 사용가능한 요양비 제품 급여비를 제공하고자 함
- 건강보험재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아니므로 비용추계의 대상이 아님³⁾. 다만, 건강보험 추가지출만큼 건강보험료 수입액 증가가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며⁴⁾,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 및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고 있어 건강보험 추가지출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가의 추가재정소요로 볼 수 있음⁵⁾⁶⁾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단기 해외 체류자 중 요양비를 수급할 가입자의 수, 가입자가 수급할 급여 품목 종류와 기간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지만, 현재 이에 대한 객관적 정보가 부재함

- 현행법에 따르면 요양비를 수급할 수 있는 급여품목은 [표 1]에 해당하며, 2024년 기준 요양비 지급액은 3,455억원 수준임
- 현재 지급하고 있는 요양비 외에 단기 해외 체류자의료기기에 대한 요양급여를 지급할 경우 급여 확대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지출 증가가 예상됨

사람에게 내주어야 하며, 요양을 받은 사람은 그 명세서나 영수증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준요양기관은 요양을 받은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위임이 있는 경우 공단에 요양비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지급이 청구된 내용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준요양기관에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준요양기관의 요양비 지급 청구, 공단의 적정성 심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3)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르면 ‘비용추계’는 발의·제안 또는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에 관하여 추계하는 것을 의미하며, ‘재정지출’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및 「국가재정법」 별표 2의 규정에 따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의미한다. 따라서 ‘재정지출’에 해당하지 않는 건강보험 재정 자체는 추계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의 국고지원 금액만 그 대상이 됨
- 4) 건강보험료율 결정 절차에 따르면 먼저 건강보험 지출 금액을 추계하고 이를 토대로 필요 건강보험료 수입 규모를 추정 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건강보험료율을 심의·의결함.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르면 공단은 건강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어 건강보험 지출에 따라 건강보험 수입이 결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5)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의2에 따르면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법률 제6619호 「국민건강증진법」 부칙 제2항에서는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정하고 있음(단, 부담금 예상수입액의 65%를 초과할 수 없음)
- 6) 2022~2024년 결산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실제 수입액의 평균 14%를 일반회계 및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였음

[표 1] 요양비 급여품목 목록

급여품목	내용
당뇨 소모성재료	○ 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 인슐린주사기 및 주사바늘, 인슐린펌프용 주사기 및 주사바늘,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당뇨 관리기기	○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자가도뇨 소모성재료	○ 자가도뇨카테터
산소치료	○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인공호흡기 대여 및 소모품	
기침유발기	
양압기 대여 및 소모품	○ 마스크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표 2] 2022~2024년 연도별 요양비 지급 현황

(단위: 건, 억원)

연도 구분	2022		2023		2024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요양비	2,126,432	2,546	2,466,539	2,936	2,800,427	3,455

자료: 2024년 건강보험 주요통계, 국민건강보험공단

-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Ⅲ. 부대의견

- 없음

I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임슬기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임슬기	02-6788-4740	sg.lim@assembly.go.kr